##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7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이준석·송옥주·천하람

이주영 · 장경태 · 모경종

서범수 · 우재준 · 김용태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이로 인해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전송횟수는 후보자는 6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제2호 후단, 제122조의2제3항제1호 신설).
- 나. 선거운동 가능 인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 중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3명으로 변경함(안 제60조제1항 단서, 제60조의3제2항제1호, 제68조제1항, 제105조제1항).
- 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 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안 제 60조의3제3항, 제122조의2제3항제1호의2 신설).
- 라. 선거에서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조정함.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에서 2배수에 5를 더한 수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명이내에서 8명이내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8명이내에서 6명이내로 변경하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도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제2호·제4호·제7호 및 같은 조제5항).

- 마.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제65조제6항 후단 신설).
-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의 표준모델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연설·대담용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추가를 전문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79조의 신설).
- 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각급선거관리위 원회는 이 법에 따라 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 링크(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를 문자메시지를 통

하여 관할구역의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 대담·토론회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14항 신설).

- 아.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에 인터넷언론사 이외에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추가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균등하게 실시하도록 하며,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안 제82조의7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2조의2제3항제5호의2 신설).
- 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함(안 제121조제2항 후단).
- 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10 이상 득표시 보전비용을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의 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같은 호 다목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 후단 중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며, 그 횟수는 후보자는 6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는 3회를 넘을 수 없다"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를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로 제60조의3제2항제1호·제68조제1항·제105조제1항에따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제존비속인 경우에는"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제60조의3제2항제1호·제68조제1항·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비용납부"를

"비용납부, 위탁발송,"으로 한다.

- 1.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중 "3배수"를 "2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人"을 "8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8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6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 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8조제1항 중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를 "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기준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 원회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연설·대담용차량"이라 한다)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의 표준모델 기준(이하 이조에서 "연설·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에 따라 연설·대담용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추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 다.
- ③ 후보자는 연설·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중"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운동기간 중"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선거운동기간 중"을 "선거운동기간 전 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선거운동기간 중"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 링크(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 대담·토론회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제1항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에 해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5항의"로 한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균등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를 "후보자가지정한 3명(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 중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 다.

제121조제2항 전단 중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

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1호 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제1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1. 제59조제2호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비용
- 1의2.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경비
- 5의2. 제82조의7제5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기통 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실시하는 인터넷광고 비용 제252조제3항 중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를 "제82조의7제6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를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 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 시지를 전송한 자"로, "8회를"을 "전송횟수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2
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	
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u>한하되, 그 횟수는</u>	<u>한하되 관할선거구선거</u>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	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
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	하며, 그 횟수는 후보자는 6
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	회(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u>수를 포함한다), 예비후보자</u>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는 3회를 넘을 수 없다.

사용하여야 한다.

3. ~ 5.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저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 자 ·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② (생략)

운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5. ~ 5. (연행과 실금)
에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예비후보
자・후보자의 배우자로 제60조
<u>의3제2항제1호ㆍ제68조제1항ㆍ</u>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
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에
<u>해당하는 경우</u>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
의 직계존비속으로 제60조의3
<u>제2항제1호ㆍ제68조제1항ㆍ제1</u>
05조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
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1. ~ 9. (현행과 같음)

/처케키 가 () \

-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현행과 같음)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 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 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1.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 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 3. (생 략)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 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 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 자인 세대주의 성명 · 주소(이 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 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 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 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 ·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 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 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 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 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 3. (현행과 같음)
-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 보자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에 위탁하여 발송한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
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
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
단의 교부신청과 <u>비용납부</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第

- ① (생략)
- ②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 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 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제135조제1 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 1. (생략)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 면·동수의 <u>3배수</u>에 5를 더 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 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 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

Ф	
<u>비용</u> 납부, 위	<u>탁</u>
<u></u> 발송,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付	千)
① (현행과 같음)	<b></b> _/
②	
1. (현행과 같음)	
2	
<u>2배수</u>	
<del></del>	

무소에 더 둘 수 있다)

- 3. (생략)
- 4. 地域區市・道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10人 이내
- 5. 6. (생략)
-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 거

선거사무소에 <u>8명</u> 이내 8. (생 략)

- ③ ④ (생 략)
- ⑤ 第13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없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國會議員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事務員이 된 경우에도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 ⑧ (생 략)
-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생 <sup>저</sup>략)
  -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다음 각 호에 따른다. <<u>후단</u>신설>

3. (현행과 같음)
4
<u>8명</u>
5.·6. (현행과 같음) 7
<u>6명</u>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5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 산입
<u>한다</u> .
⑥ ~ ⑧ (현행과 같음)
세65조(선거공보) ① ~ ⑤ (현행
과 같음)
6
<u>이 경우 후보자</u>
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 변
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서거구서거관리위위

1.·2. (생략) ⑦ ~ ⑭ (생략)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 저 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 및 소속 정 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 옷(上衣)・ 
・ 
玉 
を 
(標札)・ 
수 
기(手 旗) ·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 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
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
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⑦ ~ ⑭ (현행과 같음)
세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
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u>경우를 포함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연설·대담용 차량의 표준모델 기준 등) ① 각급선 거관리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연설·대담용차량"이라 한다)의 구조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경우의 표준모델 기준 (이하 이 조에서 "연설·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후보자등록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연설
  ·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에
  따라 연설·대담용차량의 구조
  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추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
  체를 지정하여 후보자등록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후보자는 연설·대담용차량 표준모델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을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사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저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 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 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 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2. (생 략)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 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 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 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 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 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 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 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 ④ ~ ③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
<u> </u>
1. • 2. (현행과 같음)
②
<u>선</u>
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지
1. • 2. (현행과 같음)
③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사전투표기간 전 5일까
<u> </u>

#### <신 설>

① (생략)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 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 링크(중계방송된 대담·토론회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 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선거인에게 발송하여 선거인이 사전투표기간이 시작되는 날전까지 대담·토론회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4항과 같음)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

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에 해

당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

하여----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누구든지 <u>제1항의</u>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 ⑥ (생략)

第105條(行列 등의 금지) ① 누구 를 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
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
업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터
넷 광고를 균등하게 실시하여
야 한다.
<u> </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第105條(行列 등의 금지) ①
,
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
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第119條(選擧費用 등의 定義) ① 이 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는 金錢·物品 및 債務 그 밖에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 1. (생략)
  -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 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 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 1. ~ 3. (현행과 같음)
第119條(選擧費用 등의 定義) ①
1. (현행과 같음)
2
후보자가 지정한 3명(배
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지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 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 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 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 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 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 한다.
- ③ · ④ (생 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조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
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
<u>다) 이 경우 제한액산정</u>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세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 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 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 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 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 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 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하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 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
<u>.</u>
1

가. (생략)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 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의 <u>100분의 50</u>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 2. (생략)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나
<u>100분의 70</u>
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
<u>100분의 10 미만인 경우</u>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
용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1. 제59조제2호에 따라 후보자
나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신 설>

1. (생략) 2. ~ 5. (생략) <신 설>

6. • 7. (생략)

④ · ⑤ (생 략)

죄) ① · ② (생 략)

- ③ <u>제82조의7제5항</u>·제94조· 제95조제1항ㆍ제98조 또는 제9 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비용 1의2.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 물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여 발송하는 경비

1의3. (현행 제1호와 같음)

- 2. ~ 5. (현행과 같음)
- 5의2. 제82조의7제5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실시하는 인터넷광고 비용
- 6. 7. (현행과 같음)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 제252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 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82조의7제6항·제94조· 제95조제1항 <u>• 제98조</u>-----
  - ④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에 處한다.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생략)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 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 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용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 너. (생 략)

2. ~ 4. (생략)

④ · ⑤ (생 략)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 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u>전송횟수를</u>-----

-----

다. ~ 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